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8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8월 8일

3. 제안이유

- '95.5.16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 삭제
-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(도로, 하천등)의 취득시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 및 결과통보 규정추가
-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 지정
 - 기타지역 : 400㎡ ⇒ 700㎡로 확대
 -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

-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 매각시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일도록 함.
-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종전 1급관사에서 1, 2급관사로 확대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삭제와
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조문정리
 와 일부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

주요 내용으로는

-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인 중요재산의 범위를 조례조문에서 삭제하고
 분수림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규정을 준용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
-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
 받도록 한것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는 등과 공유재산의 유상대부
 또는 사용허가등의 일부 조항과 관리부문을 삭제하고
-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시 총괄재산 관리관과
 협의 및 결과통보 규정 추가
-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 지정
-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종전 1급 관사에서 1, 2급관사로 확대 등을 신설
 또는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

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칙 부

.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